

부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1월 2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1월 2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6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(2004. 12. 15) 상정
- 제116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(2004. 12. 15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조재형)

가. 제안이유

- 경영수익사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업발굴의 한계와 적립금의 수익률 감소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어
- 재정운영의 기본원칙, 건전재정 운영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회계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“동 조례 폐지”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부천무역 등에 기 투자된 부분의 회수 방안은?</p> <p>○ 현재 기금의 설치 현황과 조성 목표는 얼마였나?</p>	<p>○ 부천무역의 경영상 어려움과 적자로 인하여 결손을 보존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으며 향후, 부천무역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봄</p> <p>○ 조성액은 현재 92억원이며 목표액은 없음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315호
의결 년월일	2004.12.23 (제116회)

제출년월일 : 2004.11.23.

제출자 : 부천시장

폐지이유

- 경영수익사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업발굴의 한계와 적립금의 수익률 감소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어
- 재정운영의 기본원칙, 건전재정 운영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회계를 폐지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“동 조례 폐지”

첨부

-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업무는 그 사무의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2005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.

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

[1991. 3. 20 조례 제1131호]

개정 1992. 1. 17 조례 제1156호

1993. 8. 9 조례 제1235호

1996. 7. 18 조례 제1435호

1997. 8. 1 조례 제1517호

1998. 10. 10 조례 제1603호

1998. 12. 1 조례 제161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경영수익 사업추진에 따른 투자재원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경영수익사업) 이 조례에서 “경영수익사업”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협의 선정된 사업으로서 실행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투자기금의 조성) ①이 조례에서 부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(이하 “투자기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부천시 경영수익사업추진을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.

②제1항 투자기금의 조성은 1991년부터 적립하며 그 투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부천시 1회계년도내 일반회계 이자수입금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
의 전출금
2. 투자기금의 운용수입금
3. 금융기관(단자회사 포함)의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및
배당금
4. 개발부담금
5. 도비보조금

제4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투자기금은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의거
운용관리하되 계리의 정확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하
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
항에 의한 기금조성을 위한 특별회계로 관리한다.

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투자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
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
1. 국채, 공채, 기타 유가증권 매입
2. 금융기관에 예치
3. 기타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

제5조(경영수익사업의 심의) 투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
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
의를 거쳐야 한다.

1.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
2.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회계 및 사업관리방식에 관한 사항
4. 투자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
5.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
6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대상사업) 투자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모래, 자갈, 석재, 천연수, 약수, 온천등 천혜자원의 개발 수익을 재고할 수 있는 사업
2. 공원묘지, 위락시설, 공용주차장등 설치 운용할 수 있는 사업
3. 관광위락지 시설 확충운용, 임수산 소득증대 가능 사업
4. 지역토산품 개발, 장려 또는 생산공장 운용가능 사업
5.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
6. 지방 공용 개발사업 영역확대 및 개발이익의 재활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

제7조(대상사업 선정) 대상사업 선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투자기금의 운용계획) ①투자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

회계연도 개시전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투자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
2. 당해연도 투자기금 사업계획
3.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협의선정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
4. 기타 투자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9조(회계공무원) ①투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특별회계운용관을 둔다

1. 기금운용관 : 경영수익업무 담당부서의 장
2. 기금분임운용관 : 경영수익업무담당
3. 기금출납원 : 경영수익업무담당실무자

②기금운용관은 투자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투자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0조(회계관리) 투자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제9조의 회계공무원이 예산회계법 및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, 지출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.

제11조(결산 및 보고)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및특별회

계결산지침에 의거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서와 전항의 결산보고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<1991. 3. 20 조례 제113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1992. 1. 17 조례 제115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1993. 8. 9 조례 제123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1996. 7. 18 조례 제143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1997. 8. 1 조례 제151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1998. 10. 10 조례 제160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1998. 12. 17 조례 제161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